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건설교통국)

의안번호	195
제 출 자	이용진 의원 외 12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선하

## 1. 제안이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지역에서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하기 때문에 구민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연료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정지원 신청 및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금 정산 보고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2023. 9. 26. ~ 2023. 10. 1) : 의견없음

## 4. 검토의견

###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관내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자가 운행노선의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적자를 실현한 경우에 마을버스 운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조례의 구조를 보면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재정지원 대상으로서 필요한 요건(안 제3조) ② 행정적 절차로서 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방식(안 제4조 및 제5조) ③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절차(안 제6조) ④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안 제7조)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사항 검토

#### 1) 재정적 지원 근거(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sup>1)</sup>에 따르면 자치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내 적자 마을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2) 성북구 재정적 지원 필요성

- 서울시는 적자를 시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월 재정지원 산정액의 85%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분은 자치구가 월 재정지원 산정액의 7.5%를 분담할 경우에 서울시가 매칭하여 7.5%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서울시와 성북구 간 협업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분담을 위해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 의 견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성북구 간 협업을 통해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조례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바,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과 타당성, 목적 적합성 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일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